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8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출산장려와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을 통한 우대혜택 우선 부여로 출산장려 정책 유도 및 농가경영비 경감에 기여

2. 주요내용

○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최종아 13세미만)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혜택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09.08.06 ~ '09.08.25)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붙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6.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예산관련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최종아 13세미만)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 1. ~ 2.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신설>	**3.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농가(최종아 13세미만)에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감면**
2. (생략)	2. (현행과 같음)